세종 2-1 생활권 P1구역

한신休플러스 · 제일 풍경채 2-1생활권 M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06. 25.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지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단서에 의거 지역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2년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2013년 6월 25일 이전부터 계속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은 빠짐없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1층을 희망하는 청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관련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07.14.)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19조의3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인정하는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 하는 주택은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 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 9.25)]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M1블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1781호 (2015.06.25.)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블록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1,655세대
○ M1블록(샛골마을 3단지) : 지하 2층 ~ 지상 29층 27개동 1,6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 아파트 2,400대, 근린생활시설 12대
[이전기관 종사자특별공급 830세대, 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16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8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0세대] 일반공급 415세대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합 계	세대별 대지지분(㎡)	계	이전기관 종사자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일반 공급	해당동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민영주택	2015000761–01	59.8969	59	59.8969	21.1026	80.9995	37.4838	118.4833	48.4308	297	149	44	15	30	9	50	301,302,304,305,307,308, 309,310,313동	19	2018년 03월
	2015000761–02	75.5531	75A	75.5531	26.0365	101.5896	47.2815	148.8711	61.0899	399	200	59	20	40	12	68	301,307,310,312,313,315, 318,319,323,326,327동	27	
			75B	75.5531	26.0365	101.5896	47.2815	148.8711	61.0899										
			75C	75.5531	26.3090	101.8621	47.2815	149.1436	61.0899										
			75F	75.5531	26.0365	101.5896	47.2815	148.8711	61.0899										
			75G	75.5531	26.0365	101.5896	47.2815	148.8711	61.0900										
			75H	75.5531	26.0365	101.5896	47.2815	148.8711	61.0899										
	2015000761–03	75.5847	75D	75.5847	26.4455	102.0302	47.3013	149.3315	61.1155	69	35	10	4	7	2	11	316,320,324동	3	
	2015000761–04	84.9020	84A	84.9020	28.5096	113.4116	53.1321	166.5437	68.6491	238	119	35	12	24	7	41	301,303,307,310,312,316, 320,324동	12	
			84E	84.9020	28.9981	113.9001	53.1321	167.0322	68.6491										
			84B	84.9020	28.2845	113.1865	53.1321	166.3186	68.6491										
	2015000761–05	84.9572	84C	84.9572	30.0701	115.0273	53.1666	168.1939	68.6939	68	34	10	4	7	2	11	301,307,310동	–	
	2015000761–06	84.9687	84D	84.9687	29.6514	114.6201	53.1738	167.7939	68.7031	29	15	4	2	3	1	4	326,327동	2	
	2015000761–07	95.8422	95	95.8422	33.2618	129.1040	59.9785	189.0825	77.4951	6	3	–	1	–	–	2	301,307,310동	3	
	2015000761–08	97.5713	97	97.5713	33.8614	131.4327	61.0606	192.4933	78.8932	188	94	–	10	–	6	78	306,308,311,314,316,320,324,325동	10	
	2015000761–09	98.7065	98	98.7065	32.7495	131.4560	61.7709	193.2269	79.8110	356	178	–	18	–	11	149	306,308,309,314,317,321,322동	23	
	2015000761–10	104.9833	104	104.9833	35.9785	140.9618	65.6990	206.6608	84.8864	5	3	–	1	–	–	1	325동	–	

※ 상기 타입 75.5531형 표기는 75A, 75B, 75C, 75F, 75G, 75H 타입 포함/ 84.9020형 표기는 84A, 84B, 84E 타입 포함임
※ 청약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 · 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5자리이하 절사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M1블록

주택형	동별 (동,라인,층별)	타입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1차계약금 1회 (계약시)	1차계약금 2회 (2015.08.17)	2차계약금 (2015.10.19)	1회중도금 (2015.12.21)	2회중도금 (2016.05.20)	3회중도금 (2016.10.21)	4회중도금 (2017.02.21)	5회중도금 (2017.06.21)	6회중도금 (2017.10.20)	잔금 (입주지정일)
59.8969	301동(4호), 302동(1~4호), 304동(1~2호), 305동(1~2호), 307동(4호), 308동(5~6호), 309동(3~6호), 310동(4호), 313동(3~4호)	59	297	1층	11	51,354	140,346	191,700	10,000	9,170	19,170	19,170	19,170	19,170	19,170	19,170	19,170	38,340
				2층	19	51,354	144,446	195,800	10,000	9,580	19,580	19,580	19,580	19,580	19,580	19,580	19,580	39,160
				3층	19	51,354	148,646	20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0,000
				4층	19	51,354	152,846	204,200	10,000	10,420	20,420	20,420	20,420	20,420	20,420	20,420	20,420	40,840
				5~15층	193	51,354	156,946	208,300	10,000	10,830	20,830	20,830	20,830	20,830	20,830	20,830	20,830	41,660
				16층이상	36	51,354	161,146	212,500	10,000	11,250	21,250	21,250	21,250	21,250	21,250	21,250	21,250	42,500
75.5531	312동(1호, 4호), 313동(1~2호), 315동(1~4호), 318동(1~4호), 319동(1~4호), 323동(1~4호), 326동(2호), 327동(1~3호)	75A, 75B, 75C, 75F, 75G, 75H	331	1층	8	64,777	191,123	255,900	10,000	15,590	25,590	25,590	25,590	25,590	25,590	25,590	25,590	51,180
				2층	21	64,777	196,723	261,500	10,000	16,150	26,150	26,150	26,150	26,150	26,150	26,150	26,150	52,300
				3층	24	64,777	202,223	267,000	10,000	16,700	26,700	26,700	26,700	26,700	26,700	26,700	26,700	53,400
				4층	24	64,777	207,823	272,600	10,000	17,260	27,260	27,260	27,260	27,260	27,260	27,260	27,260	54,520
				5~15층	229	64,777	213,423	278,200	10,000	17,820	27,820	27,820	27,820	27,820	27,820	27,820	27,820	55,640
				16층이상	25	64,777	218,923	283,700	10,000	18,370	28,370	28,370	28,370	28,370	28,370	28,370	28,370	56,740
	301동(1호), 307동(1호), 310동(1호)	75B	68	2층	3	64,777	175,823	240,600	10,000	14,060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48,120
				3층	3	64,777	180,923	245,700	10,000	14,57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49,140
				4층	3	64,777	186,023	250,800	10,000	15,080	25,080	25,080	25,080	25,080	25,080	25,080	25,080	50,160
				5~15층	33	64,777	191,123	255,900	10,000	15,590	25,590	25,590	25,590	25,590	25,590	25,590	25,590	51,180
				16층이상	26	64,777	196,223	261,000	10,000	16,1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52,200
75.5847	316동(1호), 320동(1호), 324동(1호)	75D	69	2층	3	64,804	175,196	240,000	10,000	1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48,000
				3층	3	64,804	180,296	245,100	10,000	14,510	24,510	24,510	24,510	24,510	24,510	24,510	24,510	49,020
				4층	3	64,804	185,496	250,300	10,000	15,030	25,030	25,030	25,030	25,030	25,030	25,030	25,030	50,060
				5~15층	33	64,804	190,596	255,400	10,000	15,540	25,540	25,540	25,540	25,540	25,540	25,540	25,540	51,080
				16층이상	27	64,804	195,696	260,500	10,000	16,050	26,050	26,050	26,050	26,050	26,050	26,050	26,050	52,100
84.9020	303동(1~4호), 312동(2~3호), 316동(2호), 320동(2호), 324동(2호)	84A, 84E	161	1층	6	72,792	215,408	288,200	10,000	18,820	28,820	28,820	28,820	28,820	28,820	28,820	28,820	57,640
				2층	9	72,792	221,708	294,500	10,000	1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58,900
				3층	9	72,792	227,908	300,700	10,000	2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60,140
				4층	9	72,792	234,208	307,000	10,000	2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61,400
				5~15층	85	72,792	240,508	313,300	10,000	2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62,660
				16층이상	43	72,792	246,708	319,500	10,000	21,950	31,950	31,950	31,950	31,950	31,950	31,950	31,950	63,900
	301동(3호), 307동(3호), 310동(3호)	84B	77	1층	3	72,792	208,808	281,600	10,000	18,160	28,160	28,160	28,160	28,160	28,160	28,160	28,160	56,320
				2층	3	72,792	214,908	287,700	10,000	18,770	28,770	28,770	28,770	28,770	28,770	28,770	28,770	57,540
				3층	3	72,792	221,008	293,800	10,000	1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29,380	58,760
				4층	3	72,792	227,108	299,900	10,000	19,990	29,990	29,990	29,990	29,990	29,990	29,990	29,990	59,980
				5~15층	33	72,792	233,308	306,100	10,000	20,610	30,610	30,610	30,610	30,610	30,610	30,610	30,610	61,220
				16층이상	32	72,792	239,408	312,200	10,000	21,220	31,220	31,220	31,220	31,220	31,220	31,220	31,220	62,440
84.9572	301동(2호: 4~26층), 307동(2호: 4~26층), 310동(2호: 4~25층)	84C	68	4층	3	72,840	218,860	291,700	10,000	19,170	29,170	29,170	29,170	29,170	29,170	29,170	29,170	58,340
				5~15층	33	72,840	224,860	297,700	10,000	19,770	29,770	29,770	29,770	29,770	29,770	29,770	29,770	59,540
				16층이상	32	72,840	230,760	303,600	10,000	20,360	30,360	30,360	30,360	30,360	30,360	30,360	30,360	60,720
84.9687	326동(1호), 327동(4호)	84D	29	2층	1	72,849	212,251	285,100	10,000	18,510	28,510	28,510	28,510	28,510	28,510	28,510	28,510	57,020
				3층	2	72,849	218,351	291,200	10,000	19,120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29,120	58,240
				4층	2	72,849	224,351	297,200	10,000	1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59,440
				5~15층	21	72,849	230,451	303,300	10,000	20,330	30,330	30,330	30,330	30,330	30,330	30,330	30,330	60,660
				16층이상	3	72,849	236,451	309,300	10,000	20,930	30,930	30,930	30,930	30,930	30,930	30,930	30,930	61,860
95.8422	301동(2호: 2~3층), 307동(2호: 2~3층), 310동(2호: 2~3층)	95	6	2층	3	82,172	211,828	294,000	10,000	1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58,800
				3층	3	82,172	221,528	303,700	10,000	20,370	30,370	30,370	30,370	30,370	30,370	30,370	30,370	60,740
97.5713	306동(1호), 308동(1호), 311동(1~2호), 314동(1호), 316동(3호), 320동(3호), 324동(3호), 325동(1호: 3,5,7,9, 11,13층, 2호)	97	188	1층	4	83,654	213,646	297,300	10,000	19,730	29,730	29,730	29,730	29,730	29,730	29,730	29,730	59,460
				2층	8	83,654	223,746	307,400	10,000	2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30,740	61,480
				3층	10	83,654	233,946	317,600	10,000	21,760	31,760	31,760	31,760	31,760	31,760	31,760	31,760	63,520
				4층	9	83,654	244,046	327,700	10,000	22,770	32,770	32,770	32,770	32,770	32,770	32,770	32,770	65,540
				5~15층	100	83,654	254,146	337,800	10,000	23,780	33,780	33,780	33,780	33,780	33,780	33,780	33,780	67,560
				16층이상	57	83,654	260,946	344,600	10,000	24,460	34,460	34,460	34,460	34,460	34,460	34,460	34,460	68,920
98.7065	306동(2~4호), 308동(2~4호), 309동(1~2호), 314동(1~3호), 317동(1~4호), 321동(1~4호), 322동(1~4호)	98	356	1층	16	84,628	226,872	311,500	10,000	21,150	31,150	31,150	31,150	31,150	31,150	31,150	31,150	62,300
				2층	23	84,628	237,472	322,100	10,000	22,210	32,210	32,210	32,210	32,210	32,210	32,210	32,210	64,420
				3층	23	84,628	248,072	332,700	10,000	23,270	33,270	33,270	33,270	33,270	33,270	33,270	33,270	66,540
				4층	23	84,628	258,672	343,300	10,000	24,330	34,330	34,330	34,330	34,330	34,330	34,330	34,330	68,660
				5~15층	251	84,628	269,372	354,000	10,000	2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70,800
				16층이상	20	84,628	276,372	361,000	10,000	2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72,200
104.9833	325동(1호: 4,6,8,10,12층)	104	5	4층	1	90,009	267,091	357,100	10,000	25,710	35,710	35,710	35,710	35,710	35,710	35,710	35,710	71,420
				6층이상	4	90,009	278,191	368,200	10,000	26,820	36,820	36,820	36,820	36,820	36,820	36,820	36,820	73,64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층별, 향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통합계산 평균가이며,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있으며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이며 공급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급금액에 포함된 대지비 및 건축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였음. • 층수는 건축물 상층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동일한 층이라도 저층부 등 일부 세대의 경우 층수 산정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은 층별, 향별, 위치 등이 고려된 것임. • 분양대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입주 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하 세부 사항은 원문 참조)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이전기관 종사자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①+②에 해당하는 분들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신청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총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단, 이전기관 종사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시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4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1. 사업주체가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아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먼저 확인하고 ... (이하 생략 없이 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되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종사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지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음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등)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http://apt.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확인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청약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7:3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대상세대 : 830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59.8969	75.5531	75.5847	84.9020	84.9572	84.9687	95.8422	97.5713	98.7065	104.9833	비고
세대수	830	149	200	35	119	34	15	3	94	178	3	

※ 상기 타입 75.5531형 표기는 75A, 75B, 75C, 75F, 75G, 75H 타입 포함/ 84.9020형 표기는 84A, 84B, 84E 타입 포함임 ※ 청약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 · 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동호배정은 금융결제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등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 이상)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적용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된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여부는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 필요 없음
※ 해당기관 – 철거주택 소유자 : 나 세종시업본부 / 중소기업근로자 : 대전지방중소기업청 / 국가유공자 : 대전지방보훈청 / 장애인 : 세종시, 충남도, 대전시 / 군인 : 국방부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이전기관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 162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59.8969	75.5531	75.5847	84.9020	84.9572	84.9687	95.8422	97.5713	98.7065	104.9833	비고
철거주택소유자	13	4	5	1	2	1	–	–	–	–	–	
장애인	88	24	32	5	19	5	3	–	–	–	–	
국가유공자	29	8	10	2	6	2	1	–	–	–	–	
중소기업근로자	16	4	6	1	4	1	–	–	–	–	–	
군인	16	4	6	1	4	1	–	–	–	–	–	
계	162	44	59	10	35	10	4	–	–	–	–	

※ 상기 타입 75.5531형 표기는 75A, 75B, 75C, 75F, 75G, 75H 타입 포함/ 84.9020형 표기는 84A, 84B, 84E 타입 포함임 ※ 청약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 · 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등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6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 대상세대 : 87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59.8969	75.5531	75.5847	84.9020	84.9572	84.9687	95.8422	97.5713	98.7065	104.9833	비고
세대수	87	15	20	4	12	4	2	1	10	18	1	

※ 상기 타입 75.5531형 표기는 75A, 75B, 75C, 75F, 75G, 75H 타입 포함/ 84.9020형 표기는 84A, 84B, 84E 타입 포함임 ※ 청약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 · 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타지역거주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미만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포함)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점 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공급신청자(세대주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고, 일반공급 당첨 분은 무효처리함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7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판단함. ※ 임신의 경우 계약시에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③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로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단, 관련 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1원)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세대 : 111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59.8969	75.5531	75.5847	84.9020	84.9572	84.9687	95.8422	97.5713	98.7065	104.9833	비고
세대수	111	30	40	7	24	7	3	–	–	–	–	

※ 상기 타입 75.5531형 표기는 75A, 75B, 75C, 75F, 75G, 75H 타입 포함/ 84.9020형 표기는 84A, 84B, 84E 타입 포함임 ※ 청약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 · 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신혼부부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자녀는 미포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시 서류(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유지되지 않는 경우와 입양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판명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등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세대주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총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 대상세대 : 50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59.8969	75.5531	75.5847	84.9020	84.9572	84.9687	95.8422	97.5713	98.7065	104.9833	비고
세대수	50	9	12	2	7	2	1	–	6	11	–	

※ 상기 타입 75.5531형 표기는 75A, 75B, 75C, 75F, 75G, 75H 타입 포함/ 84.9020형 표기는 84A, 84B, 84E 타입 포함임 ※ 청약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타입은 금융결제원에서 동 · 호수 배정 추첨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쟁 시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타지역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미만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포함)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등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로 세대주 포함)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2013년 06월 25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우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제4조 제3항을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청약예금(예치금액)의 지역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주택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함. (단,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을 제외하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9.25)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이하 : 가점제(40%), 추첨제(60%) 적용 / 85㎡초과 : 추첨제 적용	전국
		85㎡이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총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	
		85㎡초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총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인 자	
	2순위	전주택형	• 상기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제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당첨자격을 확인하게 됨)하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 당첨자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부적격 당첨자 판명 등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전용 85㎡이하는 "청약가점제", 85㎡초과는 "청약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일가(한 전산인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고 ... (원문 참조)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2015. 07. 10일 부터 평일시간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불 장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방문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 구비서류(은행창구 접수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2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2015년 6월 30일(화)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기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2015년 7월 01일(수) 10:00 ~ 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세종 한신휴플러스 ·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일반공급	1순위		2015년 7월 02일(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5년 7월 03일(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2015.06.25)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이후 발행분에 한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14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2014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4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2014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2014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14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접수장소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비고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일시 : 2015년 7월 01일(수) 14:00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일시 : 2015년 7월 09일(목)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일시 – 2015. 7. 14.(화)~2015. 7. 16.(목) 10:30~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기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일시 : 2015년 7월 01일(수)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5년 7월 09일(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불법행위 당첨된 경우 또는 부적격한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5년 7월 09일 ~ 2015년 7월 18일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년 7월 09일(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 공급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전산추첨, 기타 특별공급 중 경쟁이 있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 견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공개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층의 주택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일반 공급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선정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2013년 06월 25일 이전부터 계속거주)한 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층의 주택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중 최저층을 말함)
예비 입주 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가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Ⅴ 계약체결
■ 구비서류

구 분		필수	추가(해당자)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공통	O		– 계약금 입금 영수증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O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 주민등록초본(2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O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O		– 특별공급대상 확인서(동 · 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저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증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이후 발행분에 한함이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 당첨을 박탈과 함께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여부 등 청약내용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원문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213 – 107 – 000122	한신공영(주)(제일건설(주))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계약금2차 및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함. ... (원문 참조)
• 입주예정일 : 201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Ⅵ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59.8969	59	15.5150	6,120,000	1,000,000	5,120,000
75.5531	75A	20.4200	9,800,000	1,000,000	8,800,000
	75B	20.4200	9,800,000	1,000,000	8,800,000
	75C	20.4200	9,800,000	1,000,000	8,800,000
	75F	19.2560	9,640,000	1,000,000	8,640,000
	75G	19.2560	9,640,000	1,000,000	8,640,000
	75H	17.5743	9,420,000	1,000,000	8,420,000
75.5847	75D	21.9784	9,800,000	1,000,000	8,800,000
84.9020	84A	26.0775	12,040,000	1,000,000	11,040,000
	84E	26.0775	12,040,000	1,000,000	11,040,000
	84B	23.5050	11,450,000	1,000,000	10,450,000
84.9572	84C	18.1350	10,080,000	1,000,000	9,080,000
84.9687	84D	26.4196	13,140,000	1,000,000	12,140,000
95.8422	95	11.3550	8,010,000	1,000,000	7,010,000
97.5713	97	31.6730	14,870,000	1,000,000	13,870,000
98.7065	98	26.5460	12,870,000	1,000,000	11,870,000
104.9833	104	36.1880	15,760,000	1,000,000	14,76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발코니확장(계약금, 잔금)	213 – 107 – 000131	한신공영(주)(제일건설(주))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업체명
59.8969(59)	옵션1	거실+안방	3,600,000	1,000,000	2,600,000	LG전자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00,000	1,000,000	5,200,000	
75.5531(75A, 75B, 75C, 75F, 75G, 75H), 75.5847(75D)	옵션1	거실+안방	3,800,000	1,000,000	2,80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6,200,000	1,000,000	5,200,000	
84.9020(84A, 84E, 84B), 84.9572(84C), 84.9687(84D)	옵션1	거실+주방+안방	5,200,000	1,000,000	4,20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600,000	1,000,000	6,600,000	
95.8422(95)	옵션1	거실+주방+안방	5,300,000	1,000,000	4,30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500,000	1,000,000	6,500,000	
97.5713(97)	옵션1	거실+주방+안방	5,500,000	1,000,000	4,50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100,000	1,000,000	8,100,000	
98.7065(98)	옵션1	거실+주방+안방	5,500,000	1,000,000	4,50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200,000	1,000,000	7,200,000	
	옵션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100,000	1,000,000	8,100,000	
104.9833(104)	옵션1	거실+주방+안방	5,600,000	1,000,000	4,60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200,000	1,000,000	8,200,000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시스템에어컨 (계약금, 잔금)	213 – 107 – 000131	한신공영(주)(제일건설(주))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계약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선택 가능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원문 참조)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주택법」 제38조 제1호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등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사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목록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배정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거실,주방,식당,복도,안방,침실,드레스룸, (타일,천연석)현관 (타일)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통합무선AP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 경량천장틀,석고보드, 커텐박스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4) 욕실	타일(바닥,벽), 천장, 젠다이(천연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 통신배관배선
5) 주방	주방TV,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벽판넬,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싱크절수기,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전기쿡탑	설비배관, 전기, 통신,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구 배관/배선(주방TV관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6)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59	75A	75B	75C	75F	75G	75H	75D	84A	84E	84B	84C	84D	95	97	98	104
M1블록	17,404,000	21,623,000	21,813,500	22,063,000	21,623,000	21,623,000	21,623,000	22,099,000	24,351,500	24,670,000	24,516,000	24,914,000	24,396,000	28,970,000	29,217,000	28,946,000	31,039,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원문 참조)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Ⅶ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 (원문 참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취득하여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원문 참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25.)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 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당첨자 및 ... (원문 참조)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모집공고일(2015.06.25.)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단, 청약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정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한다든가 큰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행복도시내 모든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자문위원회"에서 2–1생활권은 "샛골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 · 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설계도면(사업승인도면)상 98A타입은 견본주택에서 98타입으로 표기되오니, 분양시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촬영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과 유리의 모양 및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출입구의 위치는 각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의 설치가 없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니, 기본형세대 제외품목 등은 카탈로그 및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형 선택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원문 참조)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기부채납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111,678.000㎡	110,111.8911㎡	724.9721㎡	841.1368㎡	17.65%	168.52%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단지외부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 외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원문 참조)
■ 단지내부여건
•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어도 해당동의 층수에 따라 일부벽체의 두께가 다를 수 있음. (전용면적과 바닥면적은 동일함) • 단지내 텃밭, 부대복리시설(게스트하우스, 바이크스테이션 포함)의 사용기준 및 운영관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입주자가 관리주체로 운영하여야 함. ... (원문 참조)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원문 참조)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카탈로그 등)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전천형형 시스템에어컨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 임.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제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 전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임.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원문 참조)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원문 참조)
∴ 주변환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중심복합도시 학교 건립 주체는 세종시 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학교 배치시 인접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함.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입주자집회소, 바이크스테이션, 주민운동시설(수영장/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 인근 단지와 공동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각 단지 입주민들의 동의 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인근 단지 주민복리시설을 상호 이용하는 등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1. 총 에너지 절감율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구 분	총 에너지 절감율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단지 평균	38.79%	37.02%

2. 의무사항 적용유무

구 분	설계 기준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의무사항	적용
고효율 기자재	의무사항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의무사항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의무사항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의무사항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의무사항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의무사항	적용
절수설비	의무사항	적용

▣ 신재생에너지 특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종류

설비종류	설비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공용부위 전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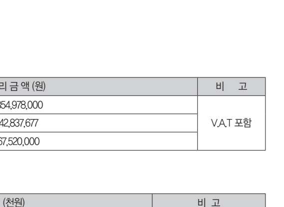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순서	특등급 설치항목(1)	설치항목(2)	비고
항목	1	배선	동체감지기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MDF실)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동통신실)	무인택배시스템	
	5	폐쇄회로 TV장비(CCTV)	욕실폰	
	6	가스밸브 제어기	주방TV	
	7	조명 제어기	일괄소등제어	
	8	난방 제어기	디지털도어록	
	9	현관 방범 감지기	엘리베이터 호출	
	10	주동현관 통제기	현관도어카메라	
	11	원격검침 전송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354,978,000	V.A.T 포함
전 기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842,837,677	
통신 · 소방	(주)무림설계기술단	267,52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주택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항 목	공 종	금 액 (천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94,094,514	
	기간이자	869,699	
	그 밖의 비용	4,908,718	
	계	99,872,931	
공사비	토목	21,259,506	
	건축	199,096,442	
	기계설비	30,176,062	
	그 밖의 공종	51,943,919	
	그 밖의 공사비	37,614,568	
	계	340,090,497	
간접비	설계비	3,341,058	
	감리비	7,188,299	
	부대비	5,588,376	
	계	16,117,733	
그 밖의 비용		25,484,139	
합계		481,565,300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85,252,240,000	제05612015–101–00080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함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설계도서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의 건설을 완료하여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이행시 당해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지정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후 보증회사가 납부를 인정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에 반하여 납부한 입주금 6. 보증회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의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주택분양계약 체결 후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입주를 허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 ... (원문 참조)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한신공영(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법인등록번호	110111–0075683
	사업자등록번호	114–81–04605
제일건설(주)	주 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3(3층)
	법인등록번호	135811–0089658
	사업자등록번호	124–86–09636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sjp1.co.kr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 연락처 1899–693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